

## 이메일 및 메신저의 내부통제방안

### 1. 현황 및 규제의 필요성

- 대부분의 증권회사가 비용측면 또는 사생활비밀침해를 이유로 시행을 보류중
-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이메일 및 메신저가 전화통화를 대신할 정도로 보편적인 의사소통수단으로 정착이 되었으며, 이를 통한 각종 불공정행위등 법규위반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

각종 금융사고 및 분쟁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**이메일 및 메신저에 대한 백업 필요**

### 2. 감독방안

#### <기본 방향>

- ◇ 이메일 및 메신저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달성하면서, 동시에 증권회사의 백업시스템 구축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
- 백업대상 범위의 합리적 조정
- 백업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생활침해 논란소지 제거

## □ 백업대상의 한정

- 우리원에서 기지도한 내용 중 증권회사가 백업을 하여야 하는 대상은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이용하여 송·수신되는 회사업무와 관련된 자료나 정보등임

이에 따라, 증권회사가 웹메일(daum, yahoo 등) 및 메신저를 전산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한 백업대상은 회사메일, 웹메일 및 메신저를 이용한 송·수신 자료임

- ※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경우 대부분 직원들의 웹메일 및 메신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산적으로 통제하고 있음

- 그러나, 웹메일을 통하여 수신되는 자료는 스팸메일등 저장하여야 하는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증권회사의 서버 과부하 또는 지나친 비용부담
- 따라서, 비용 및 효과를 감안하여 증권회사가 백업하여야 하는 대상을
  - 회사메일계정(POP3, SMTP)을 이용하여 송·수신된 자료
  - 웹메일을 이용하여 송신한 자료
  - 메신저를 이용하여 송·수신한 자료로 한정

## □ 백업 부서의 한정

- 백업대상 부서를 업무수행상 이메일 및 메신저의 사용빈도가 높고 불공정거래 및 이해상충문제의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관련부서, 조사분석부서 등으로 한정

## □ 백업대상 메신저 범위 한정

- 현재 유통되는 메신저의 수는 대략 20여가지이며, 증권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는 miss lee, yahoo, msn, fn, daum 등임
- 새로운 메신저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메신저를 백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
⇒ 회사자체의 판단하에 일정수(대략 5~7개)의 메신저만 지정하여 백업하고, 백업 할 수 없는 메신저는 전산적으로 사용을 통제

## □ 한편, 이메일 및 메신저의 내용을 백업하기전 백업된다는 사실을 임직원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는 등 사생활 침해 논란소지 제거

참고 )

## 미국의 이메일 및 메신저 관련 정책

- SEC는 증권회사가 업무관련 E-mail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(1997년)하여 운영중
  - 동 규정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업무관련 E-mail 자료들을 최소 3년 이상(처음 2년은 접근이 용이한 곳) 보관하고, 감독기관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

### ※ SEC Rule 17a-4 : Records to Be Preserved by Certain Exchange Members, Brokers and Dealers

- b. Every such broker and dealer shall preserve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3 years, the first two years in an accessible place :
  - 4. Originals of all communications received and copies of all communications sent by such member, broker or dealer (including inter-office memoranda and communications) relating to his business as such.
  - f. The records required to be maintained and preserved pursuant to Rule 17a-3 and Rule 17a-4 may be immediately produced or reproduced on "micrographic media" or by means of "electronic storage media" .....
  - 3. If a member, broker, or dealer uses micrographic media or electronic storage media, it shall :
    - i. At all times have available, for examination by the staffs of the Commission and self-regulatory organizations of which it is a member, facilities for immediate, easily readable projection or production of micrographic media or electronic storage media images and for producing easily readable images.

- 이에 따라 NASD는 Rule 3010 과 3110을 통하여 브로커·딜러가 SEC Rule 17a-4에 따라 전자통신(electronic cummunications) 내용을 저장할 것을 규정

- 한편, SEC는 2002. 7.30일 중요한 조사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업무관련 E-mail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,

**자료요청시 제출하지 않은 6개 증권회사\*에 대해 총 1,000 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한바 있음**

※ Saloman Smith Barney, Morgan Stanley, Goldman Sachs Group Inc, Merrill Lynch & Co., Deutsche Bank AG, U.S. Bancorp's Piper Jaffray Unit

- 한편, NASD는 2003.6.18 'Notice to Members'를 통하여 인터넷 메신저를 E-mail이나 서신처럼 3년간 자료로 보관할 의무 부과
- 동 Notice에 의하면 인터넷 메신저의 비공식성(informality)에도 불구하고,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메신저의 사용이 활발해진 만큼 인터넷 메신저도 서면 또는 전자통신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감독되어져야 함